

□ 관련근거

관 련 근 거	내 용
내무부령 제473호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2조(구성)	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구성은 수도권협의회와 협의회의 경우 서울특별시, 인천직할시, 경기도지사, 하도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 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, 대도시권 협의회의 경우 관련 직할시장 및 도지사, 그밖의 협의회는 관련 시장, 군수, 자치구의 장으로 한다.
지방자치법 제48조 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	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지방자치법 제142조 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②항	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□ 주요내용

(인천권행정협의회 구성 개요)

○ 구성일시 1981. 9. 23

○ 구성자치단체 6개 자치단체

- 의 장(중심 자치단체) : 인천직할시(장)
- 위 원(관련 자치단체) : 경기도, 부천시, 시흥군, 김포군, 용진군

93.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93년 11월 9일

나. 제 안 자 : 부 천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93년 11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93년 11월 16일(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회계과장 원태희)

가. 제안이유

-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

나. 주요골자

-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에 의거 중앙공원내 석왕사소유 잔여토지 매입 및 오정동 어린이 집을 신축코자 함.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• 토지매입비 및 오정동 어린이 집 신축에 따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?	• 지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시 도시건설 및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사안임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 음

나. 반대토론

-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8. 체계적 심사내용

- 없 음

93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

의안번호	207
의결	제24회
년월일	(93. 11. 20)

취득대상재산현황

□ 중앙공원 내 토지매입

- 위 치 : 원미구 원미동 산29-12번지
- 면 적 : 11,787㎡
- 소 유 자 : 대한불교조계종 석 왕 사
- 예 산 액 : 765,765천원
- 취득사유 : 멀피길 개선공사 시 석왕사 소유의 토지가 분할된 잔여토지로서 매입 후 중앙공원 조성사업 계획에 의거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 및 보건향상에 제공하고자 함.

□ 오정어린이집(오정새마을 유아원)신축

- 위 치 : 오정구 오정동 364-6번지 외
- 면 적 : 630㎡
- 건축 연면적 : 759.6㎡(230평)
- 규 모 : 지하1층, 지상2층의 라멘조
- 예산액 : 594,608천원
- 신축사유
 - 유아교육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립새마을유아원을 유아보육시설로 93. 12. 31한 전환하여야 하며
 - 기존의 오정 새마을유아원은 현재 조립식 한식건물로 녹슬고 낡아 우천 시 누수가 심하고 누전의 위험이 있으며
 - 주변 120여명의 유아를 수용하여 주부의 위협기회 확대

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제출년월일 : 1993. 11. 15

제 출 자 : 사회산업위원회

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 : 93. 11. 9

나. 제 안 자 : 부 천 시 장